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1
----------	------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함으로써 생활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안 제5조제2항)
- 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8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8. [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10. 관련부서 : 경기도 노동정책과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팀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유재현 (790-570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략)</p> <p><u><신설></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담당국장, 생활임금담당과장, 예산 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p>	<p>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u>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u></p> <p><u><삭제></u></p> <p><u><삭제></u></p>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1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하남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경과 여부와 관련없이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